

1. 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분양 받을 수 있으나 분양승인수량 기준이 연구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분양승인 신청서의 분양용도를 선택형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분양용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수량 기준 개선(안 제8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수량 기준이 모호하고 연구현장과 상이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정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하고자 함

나. 분양용도 혼돈방지를 위해 분양승인 신청서 등 개선(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

해양수산생명자원분양은 시험·연구용으로만 가능하나, 분양용도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양신청자가 분양승인 신청서에 서술한 분양목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분양자와 피분양자가 서술한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분양용도를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분양승인 및 취소 등 분양관련 업무를 국립수산물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 위임·위탁함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승인권자 등의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양체: 1회당 최대 20균주(각 50mg 이하, 단, 해조류·미세조류는 각 100mg 이하), 연간 최대 50균주

3. 추출물: 1회당 최대 20점(각 20mg 이하), 연간 최대 50점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내
[] 국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분양 개요	용도	[] 시험용	[] 연구용	[] 기타()
	목적:	(별지 가능)		
	내용:	(별지 가능)		
	수행기관:			
	총분양 개체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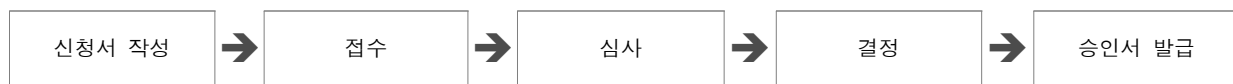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귀하

첨부서류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ddressed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제 호

[]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분양승인 내용(별지 가능)

일련번호	자원번호	일반명(학명)	자원명	분양량

분양승인 조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직인

NO.: **[] Domestic Approval for Distribution of Maritime**
[] Overseas and Fisheries Genetic Resources

Applicant	Organiza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Name (Representative) (Last, First, Middle)	Date of Birth
	Office Address	Tel.

Resources Approved to be Distributed

(Additional papers can be attached, if nee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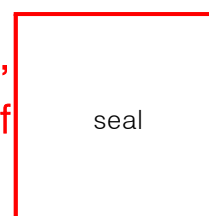
Serial No.	Resources No.	Common Name (Scientific Name)	Name of Resources	Distribution Quantity

Terms of Distribu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0 of the Act on Securing, Management, Use, etc. of Maritime and Fisheries Genetic Resources, Paragraph 3 of Article 1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Paragraph 2 of Article 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YYYY MM DD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 국내
[] 국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변경 개요	기존용도	[] 시험용	[] 연구용	[] 기타()
	변경용도	[] 시험용	[] 연구용	[] 기타()
	목적:	(별지 가능)		
	내용:	(별지 가능)		
	수행기관:			
	총 용도변경 개체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국립해양생물지원관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용도변경승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신청 목록 1부 3. 용도변경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사용계획서 1부 3. 종전의 용도에 따른 사용실적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해양생물지원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20 of the Act on Securing, Management, Use, etc. of Maritime and Fisheries Genetic Resources, Paragraph 1 of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Paragraph 3 of Article 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Applicant: _____ (name) _____ (Signature or Seal)

Addressed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Proceedings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에 따라 분양수량의 기준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생 략) 2. 배양체: 1회당 최대 20균주, 연간 최대 50균주 3. 추출물: 1회당 최대 20점(20mg 이하), 연간 최대 50점(50mg 이하) 4. ~ 5. (생 략)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에 따라 분양수량의 기준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배양체: 1회당 최대 20균주(각 50mg 이하, 단, 해조류·미세조류는 각 100mg 이하), 연간 최대 50균주 3. 추출물: 1회당 최대 20점(각 20mg 이하), 연간 최대 50점 4. ~ 5. (현행과 같음)